

[상고심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 -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절차 진행정보 공개 예정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2018. 6. 18. 시행

-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무상 운영되어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세부 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함

- 이를 통해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칙적 심판권, 소부의 병행심리,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한 법원 안팎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그동안 언론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 사건(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지정 사건 포함)의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 국민이 직접 필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전합 재판 정보의 체계적·누적적 제공을 통해 데이터화 효과가 기대됨

- 하급심 재판부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임

- 한편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대법원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완료되는 8월경부터는 변론사건과 선고사건의 '사건안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기존 흩어져 있던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례속보 등 관련 정보와 사건안내서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링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원합의체 재판 관련한 정보 수요자의 편의성과 정보간 연결성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내용]

○ 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 절차(제2조 제1항~제4항)와 해당 사건의 개요와 쟁점의 대국민 공개(제2조 제6항)

-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일지라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함(제2조 제3항)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원칙적 전합심판권 문언을 확인하는 것임

○ 특히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하여 구체화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미리 공개함(제6조)

- 소부 합의 일정을 고려하여 관례상 매월 3번째 수요일의 다음날을 전원합의기일로

진행해왔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기업법무, 기술법무, 벤처기업,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